

1.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

법률 제5,571호 1998. 9. 19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택지의 원활한 공급과 국민의 공평한 택지소유를 유도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이상의 택지소유제한과 택지초과소유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1989년 12월 제정되어 1990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그동안 시장경제원리의 제한과 경제주체의 자율성 저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택지의 초과소유부담금은 개인·기업등 택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인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택지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되,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은 개인·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그 부과기준일이 1998년 1월 1일 이후인 부담금부터 이를 면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종전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일이 1998년 1월 1일 이후인 부담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 ③(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7

년 12월 31일이전인 부담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를 삭제한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지령

대통령령 제15,899호 1998. 9. 25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택지의 원활한 공급과 국민의 공평한 택지소유를 유도할 목적으로 1989년 12월에 제정되었으나, 택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택지거래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이를 폐지(1998. 9. 19, 법률 제5571호) 하였으므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경비계획에 따라 동법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폐지령

건설교통부령 제149호 1998. 9. 25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택지의 원활한 공급과 국민의 공평한 택지소유를 유도할 목적으로 1989년 12월에 제정되었으나, 택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택지거래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동법(1998. 9. 19, 법률 제5571호) 및 동법시행령(1998. 9. 25, 대통령령 제15899호)을

폐지하였으므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경비계획에 따라 동법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 제공>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회보